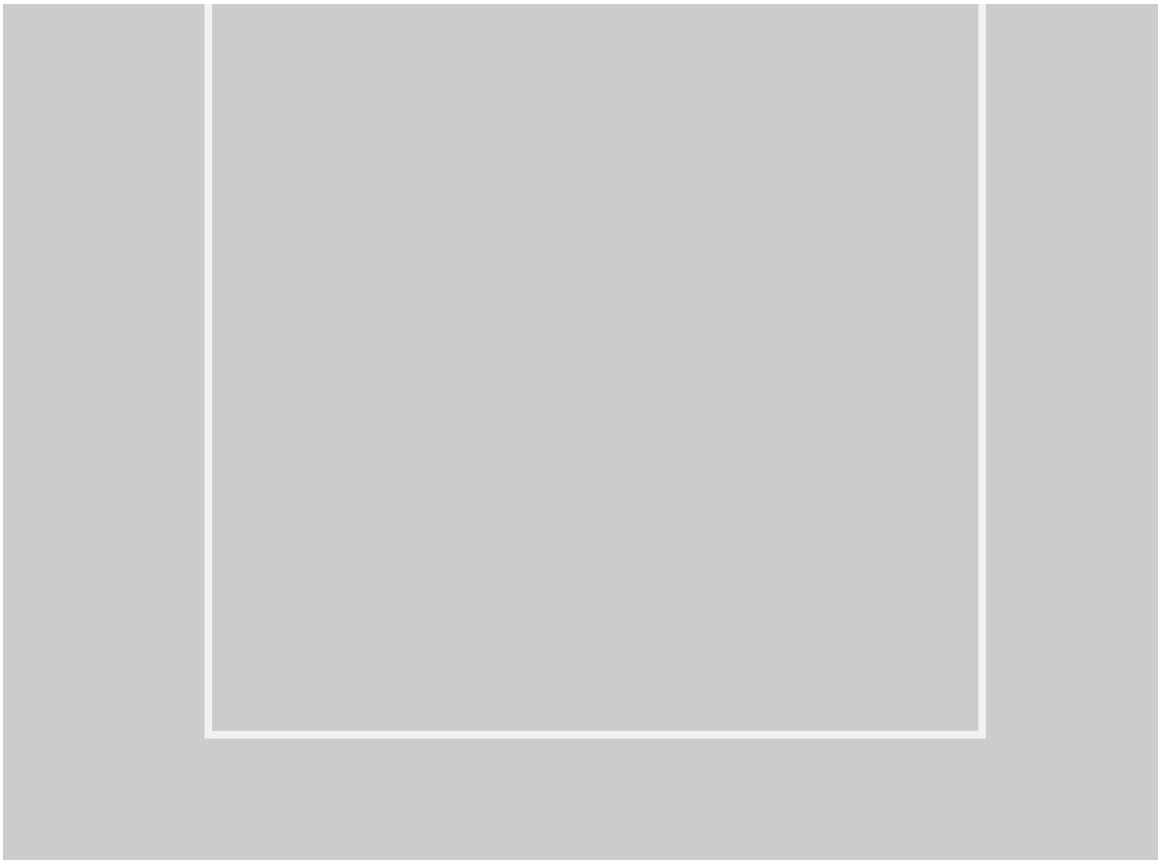


# 요약





## 1 추진 배경

☞ **비대면 활성화로 인한 소비패턴 변화 대응 및 융복합 신기술 제품의 시장출시 가속화에 대응하여, 소비자의 안전성은 강화하고, 불필요한 기업부담은 완화하기 위해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마련**

- 「제품안전기본법」 제7조에 따라, '11년 제1차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 \* (1차) '11~13년, (2차) '14~16년, (3차) '17~19년, (4차) '20~22년
  - 환경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식약처, 관세청 등 12개 부처 참여
  - ※ **(추진경과)** ①기초조사·연구용역 실시('22.1.~3), ②정책과제 수요조사('22.8.12.~9.8, 관계부처·지자체), ③부처/지자체/유관기관 검토의견 수렴('23.1.12.~1.27.)

## 2 당면 과제

- **(제도) 기업과 소비자를 위한 제도 개선**
  - 소비자의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불필요한 기업부담 완화 필요
  - 대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안전인증 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
- **(사전) 선제적 안전관리를 통한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 제거**
  - 비관리제품 규제공백 및 유통 제품의 잠재적 위험성 해소 필요
  - 신기술·신수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조기 구축으로 소비자안전 확보 필요
- **(사후) 촘촘한 시장관리를 위한 사후관리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 제품사고조사, 안전성조사 등 제품 사후관리를 데이터에 기반하여 선택과 집중 필요
  - 디지털전환을 통해 사후관리 업무 처리방식 개선 및 효율성 강화 필요
- **(기반) 효율적인 제품안전관리를 위한 기반 조성**
  - 급변하는 제품안전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 협력강화 필요
  - 제품안전 R&D 확대, 수요자 맞춤형 제품안전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교육 지원 필요

### 3 정책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 가. 비전 및 목표

<b>비 전</b>	<b>국민생활 안심을 위한 체계적인 제품안전관리 체계 구축</b>																			
<b>목 표</b>	<b>소비자의 안전성은 UP! 불필요한 기업부담은 DOWN!</b>	<table border="1"> <tr> <td>(안전인증 품목수)</td> <td>45 개('22년) (170개 세부품목)</td> <td>→ 10% 축소 조정('25년)</td> </tr> <tr> <td>(안전기준 정비)</td> <td>52 건('22년)</td> <td>→ 전수 검토개정('25년)</td> </tr> <tr> <td>(제품사고조사)</td> <td>73 개사('22년)</td> <td>→ 150 개사('25년)</td> </tr> <tr> <td>(위해차단시스템)</td> <td>235,129 개('22년)</td> <td>→ 246,000 개('25년)</td> </tr> <tr> <td>(제품안전 모니터링)</td> <td>127,847 건('22년)</td> <td>→ 150,000 건('25년)</td> </tr> <tr> <td>(제품안전정보 활용)</td> <td>350,000 건/일('22년)</td> <td>→ 380,000 건/일('25년)</td> </tr> </table>	(안전인증 품목수)	45 개('22년) (170개 세부품목)	→ 10% 축소 조정('25년)	(안전기준 정비)	52 건('22년)	→ 전수 검토개정('25년)	(제품사고조사)	73 개사('22년)	→ 150 개사('25년)	(위해차단시스템)	235,129 개('22년)	→ 246,000 개('25년)	(제품안전 모니터링)	127,847 건('22년)	→ 150,000 건('25년)	(제품안전정보 활용)	350,000 건/일('22년)	→ 380,000 건/일('25년)
(안전인증 품목수)	45 개('22년) (170개 세부품목)	→ 10% 축소 조정('25년)																		
(안전기준 정비)	52 건('22년)	→ 전수 검토개정('25년)																		
(제품사고조사)	73 개사('22년)	→ 150 개사('25년)																		
(위해차단시스템)	235,129 개('22년)	→ 246,000 개('25년)																		
(제품안전 모니터링)	127,847 건('22년)	→ 150,000 건('25년)																		
(제품안전정보 활용)	350,000 건/일('22년)	→ 380,000 건/일('25년)																		

#### 나. 중점 추진과제

##### 1 [제도] 기업·소비자 Win-Win을 위한 제도개선

- ① (안전관리대상 규제수준 조정) 디지털 활용 등 사후규제 강화를 고려하여 안전관리 수준을 조정\*하고, 안전인증 모델구분 재검토

\* 위해도 수준이 낮은 품목은 단계적(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규제수준 완화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중심으로 전환
- ② (안전기준 일제 정비) 소비자안전을 위한 필수항목은 유지하되, 안전과 관련성이 낮거나 중복시험 항목은 대폭 정비

\* 예) 운동용 슬라이더('22.9) : 도금내식성 등 불필요한 항목 폐지로 시험비용 약 20% 절감
- ③ (민간주도 안전관리 기반) 정부 차원의 안전인증(KC)제도를 기반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제품안전관리 활동 및 영세기업 인증비용\* 지원

\* 어린이제품 영세기업의 시험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시험비용 지원 및 공장심사비 인하
- ④ (국제적 환경변화 신속대응) 안전기준 최신화, 민간차원의 해외 시험결과 수용 지원 및 자발적 리콜 활성화를 위한 체계 개선

## 2 [사전] 소비자 안전강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

- ① (비관리제품 관리) 효율적인 비관리제품 부처 배정을 위한 절차 정비 및 실무자급 정기 워크숍 등 부처간 정보공유 활성화
- ② (신기술·신수요제품 안전관리) 규제샌드박스 및 신기술 신수요 제품(레저·반려동물용품 등) 안전관리, 사용후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 ③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공동 안전기준 마련, 계층별 인식제고 프로그램 운영
- ④ (제품 리스크평가 활성화) 제품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평가하여 제품출시 전·후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기업의 자가진단 체계 보급

## 3 [사후] 촘촘한 시장관리를 위한 사후관리의 디지털 전환

- ① (데이터기반 사고조사) 선제적인 소비자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 신고 기반 조사에서 컨소시엄 형태의 데이터기반 능동적 사고조사 추진
- ② (위해상품 유통·판매 차단) 차단범위를 리콜제품에서 불법제품까지 확대
- ③ (안전성조사 업무처리 개선) 체계적인 안전성조사를 위한 원스톱 업무 처리 시스템 구축, 데이터기반으로 선택과 집중
- ④ (온라인쇼핑몰 위해우려 제품) 불법제품 모니터링에 “위해우려 제품 자동 식별 SW(RPA)”를 활용하고, 쇼핑몰·중고거래 플랫폼과의 협력 강화

## 4 [기반] 효율적인 제품안전관리 기반 조성

- ① (제품안전 채널 협력 확대) 지자체 실무자 워크숍 개최 및 불법제품 합동단속 지역을 확대하고, 국제기구 및 국가간 제품안전정책 협력 강화
- ② (제품안전 기술개발사업 운영 개선) 우선지원 분야를 선정·지원, 기업의 주관기관 참여허용 검토 및 기업생산 결함제품 개선 기술자문 사업 신규 추진
- ③ (맞춤형 제품안전정보 제공) 인증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온라인상품 제품분류 체계(GPC기반) 확립 및 수요자 중심의 제품안전 정보 제공 확대
- ④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역량 강화) 리콜 이행점검 등 기존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리크스평가 등 신규 업무의 체계화 추진

## 4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안)

**비전** 국민생활 안심을 위한 체계적인 제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목 표	소비자의 안전성은 UP! 불필요한 기업부담은 DOWN!	(안전인증 품목수) 45 개('22년) (170개 세부품목) → 10% 축소 조정('25년)
		(안전기준 정비) 52 건('22년) → 전수 검토개정('25년)
		(제품사고조사) 73 개사('22년) → 150 개사('25년)
		(위해차단시스템) 235,129 개('22년) → 246,000 개('25년)
		(제품안전 모니터링) 127,847 건('22년) → 150,000 건('25년)
		(제품안전정보 활용) 350,000 건/일('22년) → 380,000 건/일('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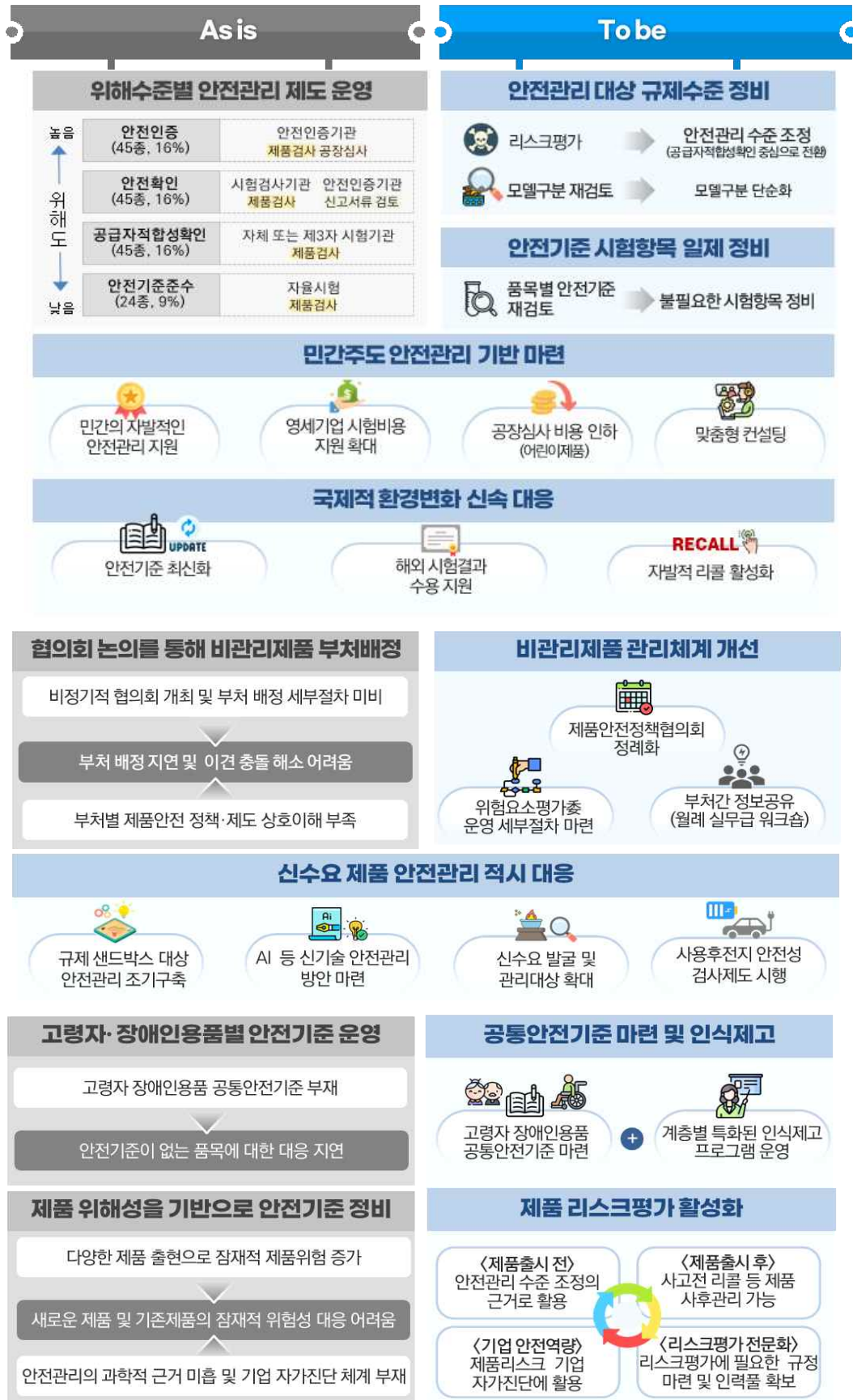
### 기본방향 및 중점과제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b>1</b> [제도] 기업소비자 Win-Win을 위한 제도 개선	① 안전관리대상 규제수준 정비 ② 안전기준 전면 재검토 및 일제 정비 ③ 민간주도 안전관리 기반 마련 ④ 국제적 환경변화 신속 대응
<b>2</b> [사전] 소비자 안전강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	① 비관리제품 규제공백 해소를 위한 체계 정비 ② 신기술·신수요제품 안전관리 ③ 사회적 배려계층 안전관리 지원 ④ 제품 리스크평가 활성화
<b>3</b> [사후] 촘촘한 시장관리를 위한 사후관리의 디지털 전환	① 데이터 기반 제품사고조사 추진 체계 구축 ② 위해상품 유통·판매 차단 강화 ③ 안전성조사 원스톱 업무처리시스템 구축 ④ 온라인쇼핑몰 위해우려 유통제품 안전관리
<b>4</b> [기반] 효율적인 제품안전관리 기반 조성	① 국내외 제품안전 채널 협력 확대 ② 제품안전 기술개발 및 역량강화 ③ 맞춤형 제품안전정보 제공 및 활용 확대 ④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역량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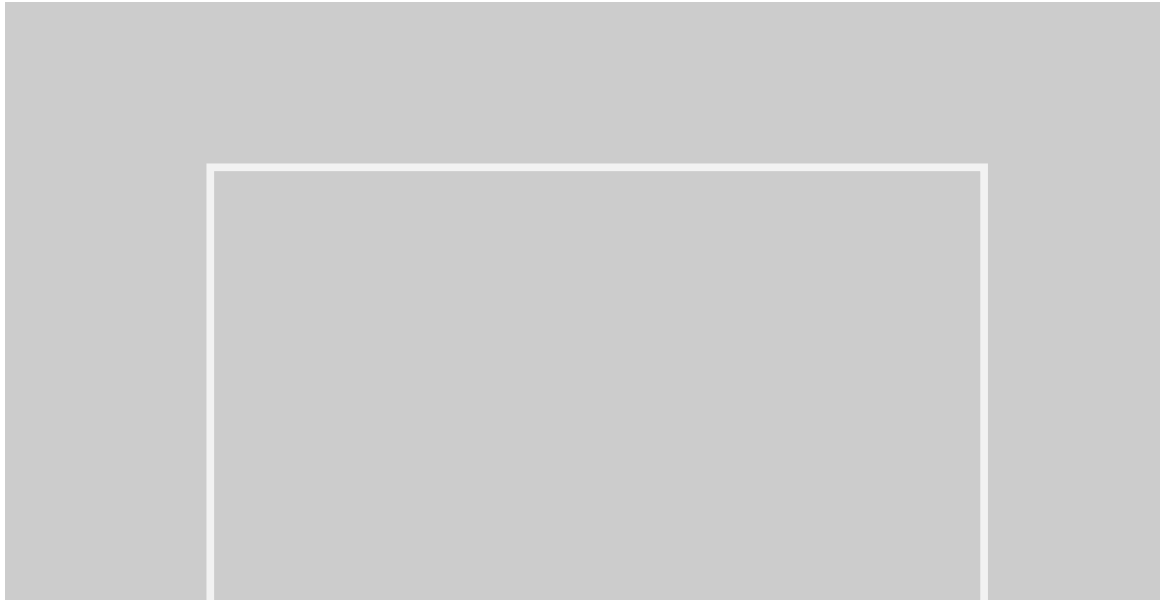
# 5 주요 변화

**1 [제도]**  
기업·소비자 Win-Win을 위한 제도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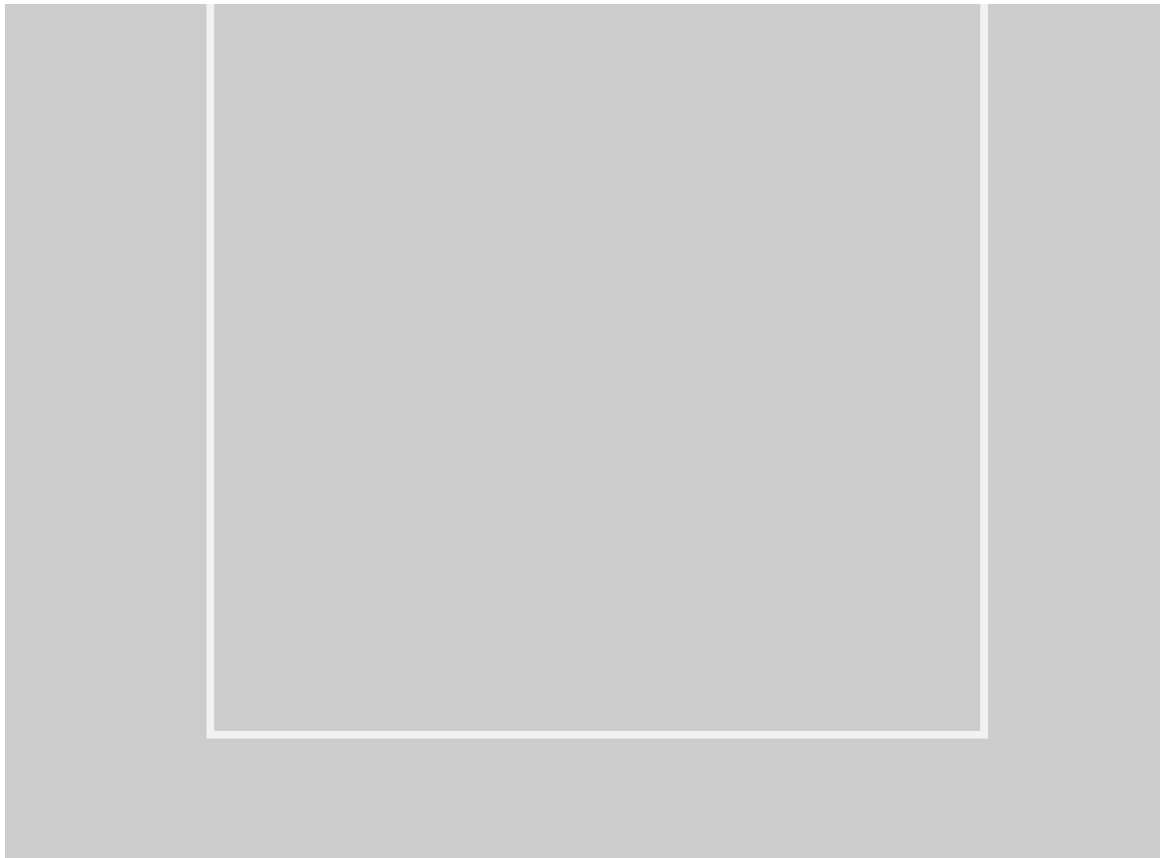
**2 [사전]**  
소비자 안전강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







## 종합계획(안)





---

#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안)

---

2023. 03.

관계부처 합동



# 목 차

I. 수립 배경 .....	19
II. 제4차 종합계획 종합평가 .....	23
III. 제품안전관리 현황 및 당면과제 .....	26
IV. 추진 목표 및 전략 .....	31
V. 중점 추진과제 .....	32
VI. 향후 추진일정 .....	50
붙임: 제4차 기본계획 중점과제별 이행 결과 .....	52



## 1. 필요성

- 「제품안전기본법」 제7조에 따라, '11년 제1차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 종합계획 수립 : (1차) '11~13년, (2차) '14~16년, (3차) '17~19년, (4차) '20~22년

- 현, 정부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국정 목표로 추진

### < 제품안전관련 주요 국정과제 >

- ①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규제비용 감축목표 설정·관리 등을 통해 기업·국민 부담 완화
- ②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 ③ 제품안전인증 정보 통합서비스제공, 민관협력을 통한 소비자안전 사각지대 해소

- 코로나 이후 어려운 기업 현실을 감안한 규제비용 감축 및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선진국형 제품안전관리 필요

- 온라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소비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비대면 유통 확산, 소비자데이터 활용 증가 등으로 디지털 정보 갈증 및 격차 해소 필요

-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위해제품으로 인한 제품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 지난 종합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계승·발전하거나 보완하고 새롭게 추진되어야 할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 제4차 종합계획(제품 생산·유통·사용 소과정 안전관리체계 혁신을 통한 더 안전한 사회 형성)

-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완수와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앞으로 3년간 중점 추진할 종합적인 안전관리 정책 수립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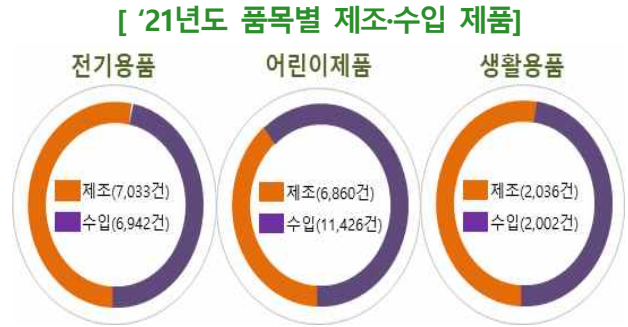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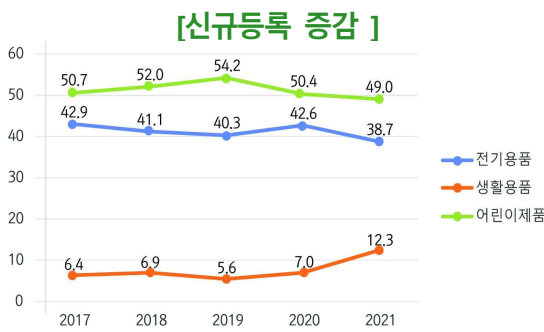
**< 참고 : 제품안전 종합계획 개요 >**

- **계획명** :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 **계획기간** : 2023 ~ 2025년 (3년마다 수립.시행)
- **법적근거** : 제품안전기본법 제7조(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 **계획 범위**(제품안전기본법 제7조제2항)
  - ① 제품안전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 ②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③ 제품사고의 발생방지 및 대책에 관한 사항
  - ④ 수입된 제품 및 새로운 종류의 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⑤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⑥ 제품안전에 관한 규제의 합리화에 관한 사항
  - ⑦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공유체계에 관한 사항
  - ⑧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또는 외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⑨ 안전취약계층의 제품 사용에 따른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 ⑩ 그 밖에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수립절차**
  -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기본계획안 수립 →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시·도지사의 의견 수렴 → ③제품안전정책협의회 협의 → ④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통보 및 소비자정책위원회 제출
- **수립경과**
  - 기초자료 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연구용역(22.4월~11월)
  - 관계부처 대상 종합계획 정책과제 수요조사 실시(22.8.12.~9.8.)
  - 관계부처 협의 및 지자체 의견수렴(23.1.11.~1.27.)
  - 유관기관, 제품안전혁신포럼 등을 통한 의견수렴(23.1.11.~1.27.)
  - 제품안전실무협의회(23.3.27.) 및 정책협의회(23.3.31.~4.10.) 협의

## 2. 제품안전관리의 환경변화

### □ 제품안전 관련 추이

- (수입) 코로나로 인해 '21년 신규 인증취득 또는 확인받은 제품\* (36.2천건)중 수입 비중은 65.9%으로 높은 수준



- (온라인) 팬데믹 이후 오프라인 쇼핑 제한 등으로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고 소비자가 해외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사례도 크게 증가\*\*

\* 온라인쇼핑몰 거래(조원) : ('20) 157 → ('21) 187 → ('22) 206 (통계청)

\*\* 해외직접 구매액(억원) : ('20) 40,677 → ('21) 51,152 → ('22) 53,240 (통계청)

### □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 (AI, IoT) 가전제품, 완구 등 인공지능(AI) 제품이 확대되고 있으나, **오남용 가능성, 데이터 편향성·프라이버시 침해 등 잠재적 위험이 존재**  
\* 예시) 스마트홈, 헬스케어, 스마트그리드, 인공지능비서, 인공지능교육

- (정보 격차) 비대면 전환 및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로 장노년층, 장애인 등 제품안전 정보 획득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정보 접근성 제고\* 필요**

\* 직관적인 구조, 단순한 배치, 음성 지원, 큰 글씨 등 비대면 환경에서 연령, 성별, 국적, 장애유무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 가능한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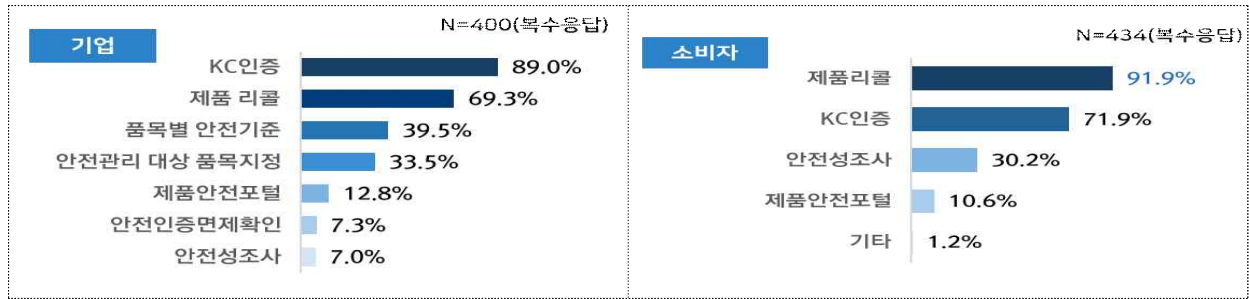
### □ 소비자 인식 현황

- 제품안전관리제도에 대해 기업은 KC인증(89.0%)이, 소비자는 제품리콜(91.9%)이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임 <2022.08, 기업소비자 설문조사>

\* 기업의 리콜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69.3%, 소비자의 KC인증에 대한 인지도는 71.9%를 기록

- 다만, 제품안전포털에 대해서는 기업의 12.8%, 소비자의 10.6%가 인지하여 비교적 낮은 인식수준을 확인

<제품안전관리 제도 인지도>



- 국민의 70%가 일상생활에서 제품을 구매 시 KC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C마크 신뢰도는 78.8%임 <2021.12, 관리원 대국민 설문조사>



[ KC마크 확인유무 통계 ]



[ KC마크 신뢰도 통계 ]

□ 국내·외 위해 환경 변화

○ (국내) 소비자 인식이 높아지고, 정부의 적극적인 사후관리 활동으로 위해제품 소비자신고와 불법제품 적발율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

\* 제품위해(건, 소비자원) : ('20) 32,932 → ('21) 30,500 → ('22) 36,518

\*\* 불법제품 신고접수/단속결과 위반율(건, 관리원) : ('20) 9,016/5,090(56.5%) → ('21) 12,852/7,542(58.7%) → ('22) 7,889/3,941(50.0%)

○ (해외) 불법·불량 신고 중 해외 구매대행 제품의 불법 위반이 일반 유통제품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소비자신고 및 위반비율(2022)	합계	온라인 구매제품		오프라인 구매제품
		소계	구매대행	
불법·불량 신고·조사(비율)	7,889건 (100.0%)	5,857건 (74.2%)	1,893건 (24.0%)	3,964건 (50.2%)
위반 건수(비율)	3,941건 (100.0%)	2,510건 (63.7%)	1,566건 (39.7%)	944건 (24.0%)

- 유럽, 미국 등에서 '22년 리콜 공표된 2,943모델 중 51모델\*에 대해 국내 시장 유통 차단

\* 유럽(2,266건, 76.9%), 중국(202건, 6.8%), 미국(165건, 5.6%) 순

1. 제4차 종합계획 개요

□ '20.7월 수립된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에서는 정보수집, 분석, 제품출시 전·후 관리 단계로 구분하여 4대 전략 21개 중점과제 제시

<제4차 종합계획의 추진목표,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목표) 4차 산업혁명, AI 등의 기술환경변화에 대응한 빅데이터 기반의 제품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안전한 국민생활 구현

(내용) 정보수집 → 분석 → 제품출시 前 관리 → 제품출시 後 관리 등 단계별 제품안전관리의 기능·역량을 강화하는 선순환 체계구축



- ① (정보수집·분석) 상품·구매 정보, 위해사례, 인증·시험, 수출입 통계, 등을 제품안전관리에 활용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안전관리 추진
  - \* △상품구매 등 빅데이터 플랫폼, △불법제품 자동식별 시스템, △정보포털 고도화 등
- ② (제품출시 前 관리) 융복합·신기술 제품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안전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추진
  - \* △융복합인증, △IoT·AI·소프트웨어 안전평가, △현장컨설팅, 시험비용지원, △취약계층 안전가이드 개발,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모듈인증 도입 등
- ③ (제품출시 後 관리) 국내시장 유통 이전에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유통 제품 단속 확대 등 보다 강화된 시장 사후관리 실시
  - \* △통관검사강화, △유통제품조사·단속강화, △사전단속팀 신설, △불법·불량 구매대행 단속강화, △리콜 전담책임제 도입, △양벌규정, 과징금 도입검토 등
- ④ (기반조성)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다양한 안전기술개발 및 교육·홍보 실시
  - \* △비관리제품 발굴강화, △관계부처·국제협력강화, △관리원역량강화, △시험인증·제품안전 강화 기술개발, △교육·홍보 다각화

## 2. 종합 평가

### 성과 요소

- 제품안전관리 디지털 정보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제품 및 시험인증, 위해정보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 및 정보 DB의 표준화 실시
    - \* 표준 상품정보 DB 및 구매정보 DB 각 100만건 누적 완료('21)
  - 온라인 상 리콜제품 유통 차단을 위한 자동식별시스템 개발 완료
    - \* 리콜제품 자동식별시스템(RPA) 개발 및 쇼핑몰 자동연계 관리시스템 구축
- 융복합, 신기술제품 환경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 방안 마련
  - SW 기능안전, 보안, 성능 관점의 평가 기준 마련
    - \* 국내 주요기업(LG전자)와 냉장고, 세탁기 등 인공지능 적용제품에 대한 평가 시범 적용('22)
  - 새로운 제품에도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기준 개발원칙 정립
    - \* 모듈형 제품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전안법」시행규칙, 운용요령 개정완료('21.9)
- 리콜제품 이행률 제고를 위한 체계 정비 및 홍보채널 확대
  - 자발적 리콜 활성화를 위한 세부절차 수립 및 기업 참여 홍보
    - \* 자발적리콜 맞춤형 이행점검 지침 개발 완료('21)
  - 업체별 전담자 지정 및 상시점검을 통한 리콜 이행 강화
    - \* 관리원 내 업체별 전담책임자 지정하여 연중 상시 감시체계 구축운영
  - 소비자 이용률이 높은 알림장애플, 맘카페 등과 연계하여 리콜정보 확산
    - \* (알림장애플) 키즈노트, 아이엠스쿨 등 / (맘카페) 대구맘365, 맘스홀릭 등
- 리스크평가 및 제품사고조사의 선진체계 마련
  - 기업 스스로 제품의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서비스플랫폼 구축
    - \* 기업 자체적으로 개발→생산→출하→A/S 전단계에서 제품의 위해성을 평가 가능
  - 제품사고조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업무절차 가이드 및 교육과정 개발
    - \* 공통과정 및 심화과정에 대한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개발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기업 부담 해소를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 및 민간자발적인 안전관리 필요
  - 불필요한 시험비용 등으로 인한 기업부담은 완화하고,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성은 강화 필요
  - 정부주도의 안전기준 적용범위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민간자발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 지원 필요
  
- 비관리, 신기술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 방지 필요
  - 비관리제품의 명확한 소관 부처 지정 등을 통해 소비자 안전 위협 제거
  - AI, IoT기술을 탑재한 신기술 제품 및 사용후 전지, 규제샌드박스 신청 제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침 및 기준 마련 필요

\* '21년 AI, IoT 접목 스마트기전의 세계시장 규모는 40조, '26년엔 126%성장한 90조 전망(리서치앤마켓스)
  
- 디지털 전환을 통한 신속한 제품안전 사후관리의 선택과 집중 필요
  - 소비자 신고 위주의 사고조사 추진체제로 인해 신고 감소 시 제품 사고 대응이 어려움에 따라 제품사고조사 추진체제의 개편 필요
  - 위해정보 DB 활용 안전성조사, 전자적 행정처분 시스템 구축, 온라인 불법제품 모니터링 자동화로 기업 편의 제공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필요

\* 행정처분 과정과 리콜제품 차단을 위한 단순반복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효율화 추진
  
- 기관간 소통 부족 및 정보 제공채널 부족
  - 코로나19 이후 타부처, 지자체, 국내·외 기관 간 소통이 부족한 실정으로 제품안전 공동감시, 위해정보 공유 등을 위한 협의체 확대 필요
  - 온라인상 거래되는 제품의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제품분류 표준 체계 확립 및 OPEN API\* 등을 통한 제품안전 정보 제공 확대 필요

\* 제품안전정보센터의 인증정보 등을 외부에서 웹 프로토콜로 호출·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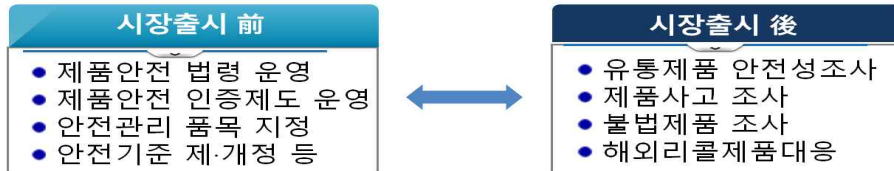
### III

## 제품안전관리 현황 및 당면과제

### 1. 제도 현황

□ (개요) 제품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출시 전·후의 안전관리제도를 운영 중

\* 관련법 :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시장출시 前) 안전관리품목으로 지정된 제품은 위해도\*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할 경우 시장 진입 및 유통 허용 등 사전안전관리

\* 위해정도에 따라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안전기준준수)로 관리

#### < 안전관리 수준, 절차 및 품목현황 >

관리수준	인증 등 준수절차	안전관리 품목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용품
① 안전 인증 (45개 품목)	제조·수입업자 → 신청 → 안전인증기관 (제품검사, 공장심사) → 인증서 발급 (인증번호) → 제품판매 (인증번호)	36	5	4
② 안전 확인 (107개 품목)	제조·수입업자 → 신청 → 시험검사기관 (제품검사, 신고서류검토) → 안전인증기관 (신고확인증 발급) → 신고번호 → 제품판매 (신고번호)	65	26	16
③ 공급자적합성 (106개 품목)	제조·수입업자 → 자체 또는 제3자 시험기관 → 제품검사 → 제품판매	75	17	14
④ 안전기준준수 (24개 품목)	제조·수입업자 → 자률시험 → 제품검사 → 제품판매	-	24	-
<b>총 282개 품목</b>		<b>176</b>	<b>72</b>	<b>34</b>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

○ (시장출시 後) 시중 제품에 대한 위해요인 확인 시 제품수거, 유통 차단, 개선권고, 소비자주의보 발령 등 사후안전관리

\* 안전성 조사, 제품사고조사, 불법제품조사, 해외리콜제품 대응 등

<b>01</b> 안전성조사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을 수거하여, 법적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검증·조사후 조치(리콜처분, 개선권고 등)
<b>02</b> 제품사고조사	동일 유형의 제품사고 재발방지 및 위해 확산방지 등을 위해 사고발생 제품에 대한 사고원인규명 조사후 조치(소비자주의보 등)
<b>03</b> 불법제품조사	미인증·허위표시 제품에 대해 불법제품 신고 내용확인 및 제품정보 검색 등 조사후 조치(판매금지 등)
<b>04</b> 해외리콜제품대응	해외 리콜제품 등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한 정보 분석후 조치 (수입통관 차단 등)

## 2. 제도 운영

- (정보관리) 제품안전정보포털\*을 통해 인증정보, 리콜정보 등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유관 기관으로부터 위해정보 및 통관정보 등을 수집 중

< 제품안전정보포털 정보서비스 현황 >



\* '14년 위해정보연계, 통합DB구축, BPMS시스템 설치 등 포털을 개편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

- 데이터 활용방안 연구·개발 및 관련 컴퓨팅 및 하드웨어 등 플랫폼 개발 등을 위해 제품안전 빅데이터 구축 로드맵 개발('21년 R&D)

- (시장출시 前)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인증시장 개방요구, 코로나로 인해 기업은 인증비용 절감을 위해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현실

- ① (제도 운영) 대내외 환경변화(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등)에 대응하는 제도개선을 준비중

\* 적합성평가기관의 자국내 거소 요건 부과 금지 및 타 당사국 적합성 평가의 수락 등

- ② (인증 운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일부 품목에 대하여 위해도 수준 평가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이중규제\*\*의 불편을 해소

\* 빙삭기, 오디오프로세서 및 영상프로세서(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 자동차용타이어(안전확인 신고대상 제외)

- ③ (기준 운영) 신제품\*의 등장으로 지속적으로 안전기준 마련 및 보완 중

- ▶ COVID-19 영향으로 UV 방사를 활용한 소독·살균기능이 추가된 제품
- ▶ 신규 화학물질(광택, 표면보호, 방수, 발수 등의 효과) 사용 제품
- ▶ AI, IoT 적용제품

□ (시장출시 後) 시중 유통제품의 안전성조사, 제품사고조사, 불법제품 조사, 해외리콜제품 대응 등을 통해 위해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

① (안전성조사) 안전성조사 결과 완구, 아동섬유 등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안전관리로 리콜조치 건수는 감소 추세

\* 리콜조치(자발적리콜 포함) 건수 : ('20) 346건 → ('21) 296건 → ('22) 264건

▶ 시장모니터링, 통계분석기반의 안전성조사 대상 선정 등 조사방법 고도화 필요

② (제품사고조사) 사고정보\*를 통해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2년부터 직권·인지조사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총괄사고조사센터를 지정·운영 중

\* 소비자위해신고(CISS), 제품사고콜센터(1670-4920) 등을 통하여 분석된 정보

\*\* 사고조사건수 : ('20) 55건 → ('21) 60건 → ('22) 73건

▶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의 제품사고조사체계 개편 및 전문조사인력 양성 등 필요

③ (불법제품조사) 비대면 유통 확산에 따라,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수입 불법제품 통관 방지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업무효율화는 지속 필요

\* 소비자단체 온라인 불법의심제품 적발 현황 : ('20) 16,863건 → ('21) 10,547 건 → ('22) 12,538건

▶ (온라인) 판매금지 등에 대한 후속관리체계 마련 법 개정 추진 필요

▶ (통관제품)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조직·인력 및 관세청과의 협업 등 강화 필요

④ (해외리콜제품 대응) 해외 주요국\* 리콜정보를 모니터링하여 국내에 동일 제품이 유통되는 경우, 유통 차단 등 소비자 보호 조치 실시 중




\* 해외 주요국(42개국) : OECD 36개 회원국, EU 5개 회원국, 중국 등

\*\* '22년 조치 : 자발적리콜(5건), 구매대행중지(28건), 불법조사의뢰(15건) 등 51건




▶ 코로나 이후 해외제품 구매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제품 모니터링 강화 및 국내 유통 차단 내실화 필요

## < 참고 : 해외 제품안전정책 현황 >




### I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UL등 민간 임의인증이 보편화되어 있으나 사후조치는 강화</li> <li>② CPSC는 규제로봇을 통해 기업 자발적인 안전 관리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CE마크의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이 약 80%차지</li> <li>② 제품의 안전을 위해 온라인쇼핑몰의 자발적인 제품안전 서약 진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PSE마크의 경우 자기적합성확인제품이 74% 차지</li> <li>② 기업의 제품안전 관점을 비용(Cost)에서 투자(Investment)로 전환</li> </ul>




### II 선제적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전자 상거래 배송제품을 위험 평가하고 비준수 제품을 차단 노력</li> <li>② RAM( Risk Assessment Methodology) 감시 시스템의 현대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신기술과 온라인제품의 안전을 위한 일반제품안전지침 마련 계획</li> <li>② AI백서와 같이 AI요건을 정하는 법률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엄격한 법집행, 정보수집 환경정비, 소비자 특성에 따른 접근</li> <li>② 위해 발생 또는 우려제품의 당해 물품회수 등의 긴급조치 명령</li> </ul>

### III 디지털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NEISS(전국전산위해감시시스템)를 통해 위해정보 수집 및 분석</li> <li>② CPSC는 Hotline를 통해 위해, 상해, 리콜, 안전정보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DB(부상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위해정보 수집 및 원격감시시스템 운영</li> <li>② RAPEX시스템을 통해 위해제품정보에 대한 신속 경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위해정보데이터뱅크시스템을 통해 각 부처의 위해정보 수집</li> <li>② 리콜 앱 "NIE ARShot" 및 제품사고 검색 서비스 "SAFE-Lite" 활용</li> </ul>

### IV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소비자의 더 나은 선택, 유용한 정보제공 및 활용 능력 증대를 위해 노력</li> <li>② 이해당사자간 협력활동수를 성과목표로 설정하여 협업 증진을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온라인 판매제품에 대한 중국과의 안전협력 강화계획을 수립</li> <li>② EU회원국 및 아프리카를 위한 기술지원 및 역량확보 노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소비자와 사업자의 Win-Win관계 및 지역협력 프레임워크 구축</li> <li>②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소비자문제 실천적 대응 노력</li> </ul>

### 3. 당면과제

#### □ 기업과 소비자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민간주도 안전관리 활성화 지원

- ◇ 국제적인 사전규제 최소화 흐름에 맞춰 안전관리대상 관리수준 조정, 제품별 모델구분 및 시험항목 재검토 등 합리적인 제도관리
- ◇ 대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안전인증 체계에 대한 심층검토, 민간주도 안전관리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한 사업자 역량 확보

#### □ 선제적 안전관리를 통한 소비자 안전 사각지대 해소

- ◇ 비관리제품 규제공백 해소를 위한 부처간 정보공유 확대와 규제 샌드박스 사업대상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전 사각지대 제거
- ◇ 융복합 AI, IoT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과 제품 리스크평가 활성화를 통한 잠재적 제품사고 위험성 해소

#### □ 촘촘한 시장관리를 위한 사후관리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 ◇ 신속·능동적인 사고조사를 위한 조사체계 개편과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확대, 통관단계 품목 정비 등 데이터기반 위해제품 유통 차단
- ◇ 안전성조사 윈스톱 업무처리시스템 구축 및 키워드 검색 S/W 등 활용을 통해 온라인 상 유통되는 위해우려 제품 차단을 위한 감시 강화

#### □ 효율적인 제품안전관리를 위한 기반 조성

- ◇ 급변하는 제품안전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 제품안전 채널간 협력과 제품안전 R&D 확대, 재기획 등을 통한 역량 확보
- ◇ 온라인 거래 증가 및 신제품 지속 출시 등에 따른 표준화된 제품분류 체계 마련과, 수요자 맞춤형 제품안전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교육 지원

# IV

## 추진 목표 및 전략

### 비전

국민생활 안심을 위한 체계적인 제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 목표

소비자의  
안전성은  
UP!  
불필요한  
기업부담은  
DOWN!

(안전인증 품목수)	45 개('22년) (170개 세부품목)	→ 10% 축소 조정('25년)
(안전기준 정비)	52 건('22년)	→ 전수 검토개정('25년)
(제품사고조사)	73 개사('22년)	→ 150 개사('25년)
(위해차단시스템)	235,129 개('22년)	→ 246,000 개('25년)
(제품안전 모니터링)	127,847 건('22년)	→ 150,000 건('25년)
(제품안전정보 활용)	350,000 건/일('22년)	→ 380,000 건/일('25년)

### 기본방향 및 중점과제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b>1</b> [제도] 기업소비자 Win-Win을 위한 제도 개선	① 안전관리대상 규제수준 정비 ② 안전기준 전면 재검토 및 일제 정비 ③ 민간주도 안전관리 지원 ④ 국제적 환경변화 신속 대응
<b>2</b> [사전] 소비자 안전강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	① 비관리제품 규제공백 해소를 위한 체계 정비 ② 신기술·신수요제품 안전관리 ③ 사회적 배려계층 안전관리 지원 ④ 제품 리스크평가 활성화
<b>3</b> [사후] 촘촘한 시장관리를 위한 사후관리의 디지털 전환	① 데이터 기반 제품사고조사 추진 체계 구축 ② 위해상품 유통·판매 차단 강화 ③ 안전성조사 원스톱 업무처리시스템 구축 ④ 온라인쇼핑몰 위해우려 제품 안전관리
<b>4</b> [기반] 효율적인 제품안전관리 기반 조성	① 국내외 제품안전 채널 협력 확대 ② 제품안전 기술개발 및 역량강화 ③ 맞춤형 제품안전정보 제공 및 활용 확대 ④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역량강화

## 1. 기업·소비자 Win-Win을 위한 제도개선

## 1- ① 안전관리대상 규제수준 정비

## 【 필요성 】

- ▷ 위해도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적절한 수준의 안전성 확인 절차를 적용하고 있는지 재평가할 필요
  - \* 국제적으로 사전규제는 최소화하고 시장감시 기능을 활용한 사후규제를 확대하는 추세
- ▷ 新제품 구분 불명확, 세분화된 모델구분 등으로 일부 중복 검사가 발생하여 시험·검사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할 우려

## □ 디지털 활용 등 사후규제 강화를 고려하여 안전관리 수준 조정

- (관리수준) 안전관리 품목별 사고 빈도, 인증 불합격율, 안전성 조사결과 등을 반영한 리스크평가를 실시하여 안전관리품목 수준 조정\*
  - \* 위해도 수준이 낮은 품목은 단계적(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규제수준 완화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 중심으로 전환

## □ 안전인증 모델구분 재검토

- (모델구분) 완구를 포함하여 유아용 섬유제품, 학용품 등 어린이제품 전반에 대한 모델 구분을 재검토하고 안전기준 개선 추진

## &lt; 모델의 구분 개선 예시(완구, '22.9) &gt;

- (현황) 작동성, 사용연령, 재질 기준으로 모델 구분 중
- (개선방안) 작동여부에 따른 구분을 폐지하여 인증을 위한 시험·인증 건수 축소

모델의 구분		구분 기준
종류별	작동성	작동완구(전기, 관성, 태엽), 비작동완구
	사용연령	3세미만, 3세이상 8세미만, 8세이상
재질별		섬유제, 종이제, 플라스틱제, 목제, 금속제 등 (완구를 구성하는 재질)

## 1-2 안전기준 전면 재검토 및 일제 정비

### 【 필요성 】

- ▷ 소수 전문가, 인증기관에 의한 안전기준 관리에서 벗어나, 소비자, 업계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합리적 제도 관리 필요
- ▷ 소비자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품질 관련 안전기준 항목 정비를 통해 제품 시험비용 절감 필요
  - \* 예: 운동용 슬라이더 안전기준에 도금내식성 및 스프링 재질요건 등을 명시

### □ 안전성과 연관성이 낮은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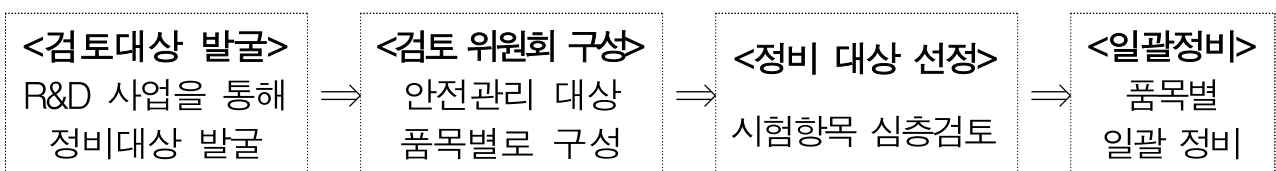
- **(정비방법)** 운동용 슬라이더(22.9, 개정)\* 등 시험항목 정비사례를 반영하여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전 품목을 대상으로 순차 정비(23.上~)
  - \* 도금내식성, 재질요건 등 불필요한 기준 폐지로 시험비용 약 20% 절감(30→24만원) 기대
- **(안전기준 시험항목)** 안전기준에 규정된 시험항목 중 소비자안전을 위한 필수항목은 유지하되, 안전과 관련성이 낮거나 중복시험 항목은 대폭 정비

#### < 주요 정비 대상 >

<b>품질 제외</b>	표면 벗겨짐 검사 등 소비자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기준은 제외
<b>중복 완화</b>	유사제도와의 중복규제로 검출 우려가 없는 유해물질 기준 재검토

- **(시험방법 효율화)** 제품 시험·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면서 불필요한 비용을 저감할 수 있는 신규 시험방법 개발·적용
  - \* 예시: (현행) 정밀분석 → (개선) 사전스크린 후 정밀분석(해당 시험비용 최대 40% 저감 가능)
- **(추진체계)** 정부·소비자·업계·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중심 품목별 검토 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기준을 재검토 후 일괄 정비 추진

#### < 안전기준 정비 체계 >



### 1-3 민간주도 안전관리 지원

#### 【 필요성 】

- ▷ 정부 차원의 안전인증(KC)제도를 기반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제품안전관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제품 사용환경 조성 필요
  -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크나, 어린이제품 업계 대부분이 영세 기업으로 제품안전관리 비용 부담 경감 필요
- \* 어린이제품 제조기업은 90% 이상이 5인 미만 영세·소기업

#### □ 민간주도 안전관리 활성화

- **(지원 대상)** 영세기업이 다수이고 저가 제품 위주인 품목을 중심으로 위해 제품 발생의 주원인이 되는 핵심 요인(공정, 원부자재 등) 해소 지원
- **(지원 방안)** 유해물질 미사용 공정(예:프탈레이트가 없는 합성수지) 개발·보급 및 친환경 자재 공급기업(예:염색가공공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지원

#### □ 영세기업 시험비용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시험비용 지원)** 어린이제품 영세기업의 시험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수요기업 대부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비용 지원
  - \* 수입유통기업 위주인 그간의 수혜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사 등 비수혜 기업의 시험인증 수요 및 기업 내 실태 파악을 통해 시험인증 비용 지원 대상, 규모 등 지원 방안 마련
- **(공장심사비 개선)** 영세기업이 대부분인 어린이제품 업계의 특성을 고려, 공장심사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인하하여 관련 업계의 비용 부담 해소
  - \* (현행) 국내 : 25만원, 국외 : 60만원 → (개선) 국내·외 : 20만원
- **(맞춤형 컨설팅)**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어린이제품 제조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확보
  - \* 사고신고 접수 현황 등을 통해 사고발생률이 높은 제품의 제조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제공

#### ※ 어린이제품 제조기업 현황

구분	인력	사업체수(개)	종사자수(명)	출하액(백만원)	비율(%)
제조 기업	19명 이하	170	2,270	383,817	60.28%
	20명~49명	85	1,563	301,291	30.14%
	50명 이상	27	1,553	525,842	6.03%
	계	282	5,386	1,210,950	96.45%

## 1-4 국제적 환경변화 신속 대응

### 【 필요성 】

- ▷ 안전관리제도 및 국제표준 등 국제적 변화 추세를 국내 안전인증제도에 신속하게 반영하여 국내외 기준 불일치 등 기업 애로 해소 필요
- ▷ EU 등 각 국가에서 제기하는 안전인증제도 개선요구에 대해 일방적 수용을 지양하고, 국제적 환경반영 및 상호호혜원칙에 따라 대응 필요
- ▷ 주요국은 정부·사업자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강제 리콜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 참여율이 높음

### □ 상호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국제환경 변화를 신속하게 대응

- **(안전기준 최신화)** 국제표준과 부합화된 안전기준을 적기 현행화하고, 국내 고유 안전기준 시험항목 중 국제표준과 불일치 항목 개정
  - \* 안전기준 관련 국제표준 제·개정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현행화 지연 방지
- **(해외 시험결과 수용)** 국내 안전인증기관과 해외기관 간 시험·검사 결과 상호 인정 활동에 대한 지원(법적 근거마련\*, 국가간 협력채널 활용 등) 확대
  - \* 예) 현행 전안법은 안전인증기관의 국내외 시험기관 시험결과를 수용 가능토록 규정

### □ 안전인증 기관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

- **(인증기관 역량)** 국내 안전인증기관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해, 법정 지정요건 등 제도 개선방안 검토
  - 민간 시험기관의 안전인증분야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비영리요건 등 제도 타당성 및 개편시 파급효과\* 분석 후 개선사항 도출
  - \* 시험인증 수수료 상승,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의 국내 시장 잠식 우려 등 부작용 우려

### □ 자발적 리콜 활성화를 위한 리콜 이행체계 개선

- **(지원체계 구축)** 사업자 불편·애로사항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자발적 리콜 매뉴얼 배포 및 세부절차에 대한 관련 규정 정비
  - \* 자발적 리콜 담당자 전담제를 통하여 리콜 내실화 추진

## 2. 소비자 안전강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

### 2-① 비관리제품 규제공백 해소를 위한 체계 정비

#### 【 필요성 】

- ▷ 비정기적인 협의회 진행\* 및 비관리제품 관리 필요성 검토를 위한 절차·방법이 불명확\*\*함에 따라 협의회 주요기능 약화 우려
  - \* 개최현황: (제1차) '17.11.1. (제2차) '18.4.12. (제3차) '18.12.21. (제4차) '20.7.16.
  - \*\* 위험요소평가위원회(주요기능①비관리제품 위험요소 평가, ②소관부처(안) 마련)를 구성·운영토록 "제품안전정책협의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방안 미비
- ▷ 부처별 제품안전 정책·제도에 대한 상호이해 부족으로 인한 부처간 이해충돌 및 대립 해소 필요
  - \* 정책협의회·실무협의회 모두 간부급 이상이 참여하는 회의체이며, 행정부담 등의 이유로 비관리제품 소관부처 지정에 소극적인 분위기

#### □ 효율적인 비관리제품 부처 배정을 위한 절차 정비

- (절차마련) 제품안전 정책협의회·실무협의회 정기개최 추진 검토 및 위험요소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세부절차 마련 등 정비
  - \* 「제품안전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 그간 비정기적으로 진행된 제품안전정책협의회 정례화를 통한 제품안전에 관한 부처간 협의·조정 기능 강화
  - 비관리제품의 위험요소 평가 및 안전관리 검토 필요제품에 대한 소관부처(안)을 마련하는 위험요소평가팀 세부 운영절차 마련

#### □ 비관리제품에 대한 부처간 정보공유 활성화

- (정보공유) 실무자급 정례 워크숍 및 과장급 회의를 통한 정보 공유로 부처간 이견 최소화 및 상호 이해도 제고
  - 12개 부처 릴레이 워크숍\* 개최를 통해 부처별 제품안전 관련 주요 정책·제도 소개, 신규품목 지정 현황, 이슈 민원 등 정보공유 추진
  - \* (참석대상) 「제품안전기본법」에 명시된 제품안전정책협의회 12개 참여부처 실무자

## 2-② 신기술·신수요제품 안전관리

### 【 필요성 】

- ▷ 사회구조 및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캠핑용품 등 새로운 유형의 제품출현 대응 및 신수요분야 융복합 제품의 시장 출시 지원 필요
- ▷ 세계 탄소중립에 따른 전기차, ESS분야 급성장에 따라 사용후전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안전성검사제도 확립 필요
  - \* 전세계 사용후전지 시장은 '25년 3조원 → '50년 600조원 규모로 확대 전망(SNE리서치)

#### □ 규제샌드박스 사업 대상의 안전관리 체계 조기 구축

- **(조기 시장진출)** 신기술 적용제품에 대한 우선허용-사후규제(실증특례·임시허가)가 가능하도록 예비안전기준 마련 등 적극 지원
  - \* 사례: (전기차충전기) 고정형 외 이동식에 적합한 안전기준 마련

#### □ AI접목 등 신기술 대응 및 소비자 생활 밀착형 제품 신수요 대응

- **(신기술)** 인공지능(AI), IoT 등 신기술이 접목된 혁신제품 출시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안전관리방안\* 마련
  - \* (단기) 인공지능 응용 가전제품 안전관리지침 개발
  - (중장기) 사업화 지원을 위한 예비안전기준 마련 및 안전기준 도입 등
- **(신수요)** 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제품안전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적극 발굴하고, 위해성 평가, 국제 동향 분석 등을 통해 관리대상 확대

#### < 주요 정비 대상(안) >

레이저용품	에탄올화로, 무시동히터 등 최근 활발한 레이저활동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제품의 안전기준 제정
반려동물용품	반려동물 부양인구 증가에 따라 관련 용품의 실태조사, 위해성 평가 등 안전관리 필요성을 우선 검토하고, 필요시 유관부처(농림부)와 협력방안 논의

#### □ 환경순환 촉진을 위한 사용후전지 안전성검사제도 시행

- **(검사제도)**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23.10월~)
  - \* 주요내용 : ①안전성검사 의무, ②안전성검사 표시, ③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④안전성검사기관의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등

## 2-3 사회적 취약계층 안전관리 지원

### 【 필요성 】

- ▷ 일부 제품(고령자 7종, 장애인 1종)에 대해 안전관리를 진행중이나, 고령자 증가 추세\* 등에 따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안전 사각지대 해소 필요
  - \*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사회(65세 902만명, 전국민의 17.5%)로서 '25년 초고령사회(65세 20%↑) 진입이 예상되며, 등록장애인은 263만명(전국민의 5.1%) 수준
  - \*\* 고령자용품 유통규모(국민건강보험공단, 억원) : ('18)1,315 → ('19)1,692 → ('20)1,976
- ▷ 어린이제품 주 구매자인 학부모 대상 제품안전교육이 부재하며,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부족

### □ 고령자, 장애인 등 제품안전 취약계층 제품 공통기준 마련

- (공통안전기준) 고령자·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규·기존 제품중에 안전기준이 없는 품목에도 적용 가능한 공통안전기준 마련
  - 보건복지부 등 부처협의(~'23.1) 거쳐 공통안전기준 마련('23.2~)
  - \* 연구용역('21.3~'21.10), 유관기관 의견수렴(재활공학연구소 '21.12, 국립재활원 '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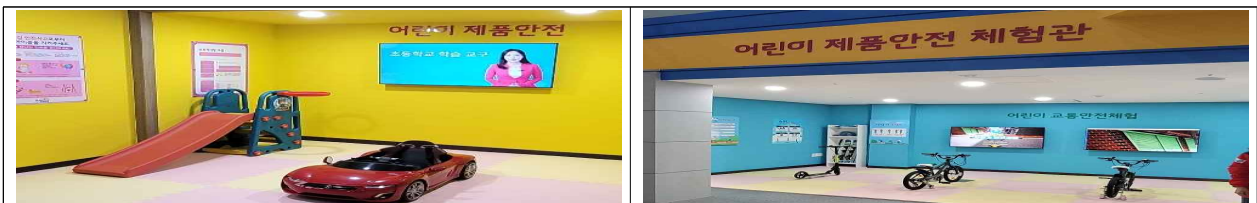
#### < 고령자·장애인 공통안전기준(안) 개요 >

- ▶ 적용범위: 만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대상
- ▶ 안전요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물리적·전기적 요건 등
- ▶ 시험방법: 품목별(목욕용품 배설용품 신체보호용품 이동주행용품 등)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 등

### □ 계층별 특화된 인식제고 프로그램 운영

- (배려계층)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계층별 맞춤형 제품안전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자체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 협의 추진
  - \* (서울시)찾아가는 보이스피싱 교육, (구례군)안전학당 등 기 운영중인 프로그램과 연계 협의
- (어린이) 운영중인 선도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학부모 참여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체험관 방문 확대\*를 통한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 \* 인근지역 유치원, 초등학교 우선 방문 예약이 가능토록 해당 체험관과 협의

<어린이제품안전체험 부스 사진(강원, 365세이프타운)>



## 2-4 제품 리스크평가 활성화

### 【 필요성 】

- ▷ 기술 발전과 다양한 제품의 출현 등으로 잠재적 제품위험 증가 해소 필요
  - \* 융복합·신기술 제품 출현, 기존 제품의 다변화 및 제품 사용방식 변화로 생긴 새로운 위해 요인으로 제품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

- (제품 출시 전) 품목 단위 제품 리스크평가 정례화 및 체계화
  - (관리수준 조정 Tool) 품목별 위해 트렌드 확인, 관리수준 조정 필요성 파악을 위해, 전 품목에 대한 포괄적인 리스크평가(통계·DB기반) 매년 실시
  - (심층평가) 신규 위해·규제완화수요 품목 등 기준 재조정 필요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심층 리스크평가(시험, 실태조사 등 포함) 유형화 및 체계화
    - \* 융복합·신기술, 사각지대(소비자원 제안 등) 품목, 심층조사 필요(포괄적 리스크평가) 품목 등
- (제품 출시 후) 사회 이슈(물의) 제품에 대한 리스크평가 확대
  - (위해제품 차단) “위해 우려 제품”(소비자원 신고 다발, 사회 이슈화 등)에 대한 리스크평가\* 확대로 리콜 권고 등 기업의 신속한 안전조치 유도
    - \* 자료제출 요구(기본법 제15조, 전안법 제41조, 어린이제품법 제14조)를 통해 해당 제품 생산량과 위해사례(VOC) 등 입수 → 리스크평가(위해사례/제품수)
  - (안전성조사 연계) 결함이 확인된 제품 등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실시
- (기업 안전역량) 기업의 제품 리스크 자가 진단 체계 보급·활성화
  - (자가진단) 제조·유통 기업이 제품 출시 전 직접 활용 가능한 범용적인 제품 리스크 자가진단키트(온라인 플랫폼, kips-portal.i000.pw) 개발·운영(보급)
- (제도 기반) 리스크평가 제도 이행을 위한 규정, 인력 등 확보
  - (규정 정비) 현행 법 조항\* 근거 리스크평가 제도 이행 지침 마련
    - \* 자료수집(기본법 15조, 16조), 조사(기본법 9조), 위해기반 리콜(기본법 10조, 11조) 등
  - (인력 확보) 리스크평가 전문가 인력풀 마련 및 전문위원회 내실화

◆ 제품 리스크평가 ◆

□ 정의 : 시중 유통 중이거나 유통 준비 중인 품목 및 제품이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위해수준\*) 평가하는 기법

\* A, B, C, D, E 5단계로 위해수준을 구분

□ 평가 방법 분류

구분	대상	위해 시나리오	발생 빈도	위해의 심각성	위해수준 평가	후속조치
포괄적 품목 리스크평가	안전관리 대상 쉰 품목	사고 발생, 위해 보고 (신고) 시나리오	위해 보고 건수 / 유통현황 (통계 등)	경미~사망 (5단계) 구분	R-Map	안전관리 수준 조정 심층 리스크평가 항목 발굴
심층 품목 리스크평가	신제품, 규제완화 수요 등 주요 관심 품목	전문가의 정성적 시나리오 유추 + 유사 품목 기준 및 사고사례 참고	시나리오 각 단계별 발생 확률의 조합 (관련 제품시험 및 실태조사 실시)	경미~사망 (5단계) 구분	RAPEX RAG	안전기준 제·개정 소비자 안전사용 홍보
특정 제품 리스크평가	사고·위해 신고 제품	사고 발생, 위해 보고 (신고) 시나리오	위해 보고 건수 / 유통현황 (사업자 보고 등)	경미~사망 (5단계) 구분	R-Map	제품 리콜 등 안전조치 소비자 안전사용 홍보
제품 리스크 자가진단	기업 출시 준비 제품 소비자불만 다수 제품	사업자의 정성적 시나리오 유추 + 정부가 사고·위해 사례 등 정보(DB) 지원	시나리오 각 단계별 발생 확률의 조합 (사업자 추론)	경미~사망 (5단계) 구분	RAPEX RAG	출시 전 제품 개선 출시 후 문제 제품 자율조치

□ 국외 제도 현황

국가	방법론	관련 기관	특이사항	비고
EU	RAPEX RAG	EC 및 EU 회원국	RAPEX RAG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성적+관련 위해 사례를 바탕으로 시나리오 유추	심층 품목 리스크평가 유사
일본	R-MAP	METI + NITE	사고 보고제도 활성화로, 일본 내 사고 발생 데이터가 충분 → R-MAP	특정 제품 리스크평가 유사
미국	Risk Assessment	CPSC	사고 보고자료, 상해 위해정보, 사고조사 등을 통해 쌓은 DB로 위해 시나리오 분석 실시 → 리스크평가 수행	포괄적 품목 리스크평가 유사

### 3. 촘촘한 시장관리를 위한 사후관리의 디지털 전환

#### 3-1 데이터 기반 제품사고조사 추진 체계 구축

##### 【 필요성 】

- ▷ (조사현황) 현행 소비자 신고 건 위주로 사고조사를 추진하고 있어, 국내 발생 제품사고에 능동적 대응이 어려움  
\* 제품위해(건) : ('20) 32,932 → ('21) 30,500 → ('22) 36,518 (소비자원)
- ▷ (조사체계) 정부 주도\*로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사고조사센터가 부분 참여하는 사고조사 대응체계로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제품사고조사 신속 추진에 한계  
\* 정기적 순환보직 등으로 사고조사의 전문성·지속성·체계성 유지 애로

#### □ 컨소시엄 형태로 사고조사 본격 추진

- (체계개편) 현행 국표원 주도 사고조사에서 제품안전관리원 및 사고조사센터가 주도(컨소시엄)하는 제품사고조사 추진체계\*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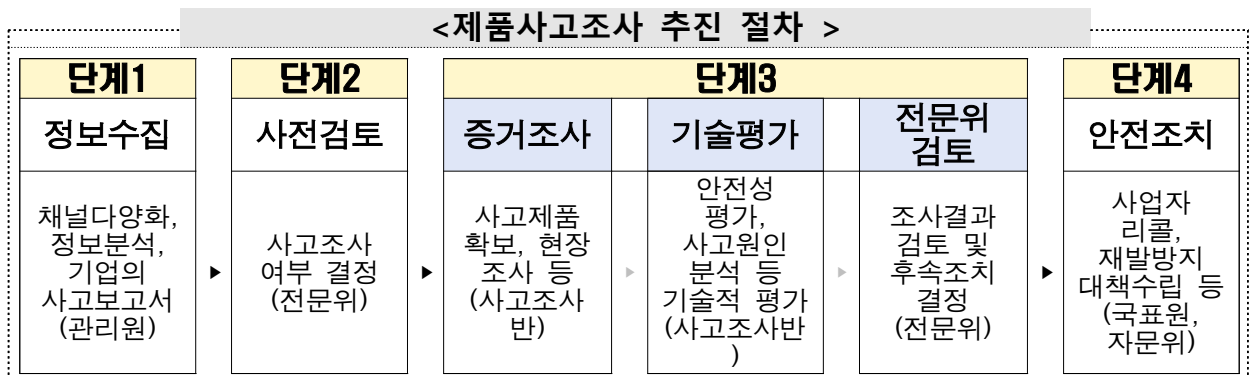
\* (국표원) 컨소시엄 구성, 제도운영 총괄, (컨소시엄) ①제품안전관리원 - 정보수집·DB화, 사전검토, ②전문위 - 기술적 자문, ③사고조사센터 - 증거조사, 기술평가 등

#### □ 데이터 기반의 능동적 사고조사 추진

- (능동적 대응) 소비자 신고 건 위주 사고조사에서 제품위해·사고정보 수집·DB화하여 데이터 기반 능동적 사고조사\* 추진·확대

\* ①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②수집정보 관리·분석 강화, ③제품사고조사 절차 효율화, ④신속대응반 구축·운영, ⑤컨소시엄 참여기관 및 조사대상 확대 등

#### ※ 사고조사 절차



### 3-2 위해상품 유통·판매 차단 강화

#### 【 필요성 】

- ▷ (위해상품 유통 차단) 지자체에서 전안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처분한 불법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연계하고,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 필요  
\* 시스템 운영매장 현황(개): ('19)173,723 → ('20)180,891 → ('21)222,481 → ('22)235,129
- ▷ (통관 품목분류번호·규격) 서로 다른 물품이 동일 HSK로 분류되거나, 물품의 상태, 용도, 규격 등에 따른 상세구분이 곤란하여 통관조사의 선택과 집중이 어려움

#### □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확산

- (시스템 확산) 영세한 소규모 유통기업에는 시스템 초기 구축 비용을 지원하고, 중소 유통매장에는 시스템이 탑재된 POS기기 보급을 통하여 확산 추진  
\* 위해상품차단시스템 운영매장 확산 : ('22) 235,129개 → ('25) 246,000개
- (차단범위 확대) 지자체에서 처분한 KC 미인증 등 불법제품 정보를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불법제품 유통차단 강화  
\* 지자체에서 불법제품을 시스템에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자체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협력 확대

#### □ 불법·리콜제품 유통 모니터링 강화

- (유통경로 기반)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제품 점검\* 정례화 및 '재래 시장' 점검 등 제품의 사용장소 및 유통경로를 고려한 점검 실시('23년~)  
\* 매년 3월·9월, 전국 5개 주요지역(서울, 경기·인천, 충청, 경상, 전라 등)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밀집구역(유무인 문구점·편의점 등)에서 완구·학용품류 불법·리콜제품 유통 점검

#### □ 위해상품 수입통관 차단을 위한 품목분류번호 세분화 및 규격설정

- (품목번호 세분화) HSK 10단위 분류체계에 하위코드 신설  
\* (예시) 기타 질소비료(3102.10-9000)에 대하여 품명 및 용도 등에 따라 3102.10-9000-01~02 또는 3102.10-9000-01-101~104로 세분화
- (품목규격 설정)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HSK 세분화 대상 품목에 대한 품명, 규격, 용도 등 설정(~`23.上)  
\* (예시) 알루미늄 가루(7603.20-1000)에 대하여 7603.20-1000-01(모양·구형, 사이즈-4~10 $\mu$ m, 순도·중량기준 90% 이상), 7603.20-1000-02(그 외의 것) 등 규격 설정

### 3-3 안전성조사 업무처리 개선 및 선택과 집중

#### 【 필요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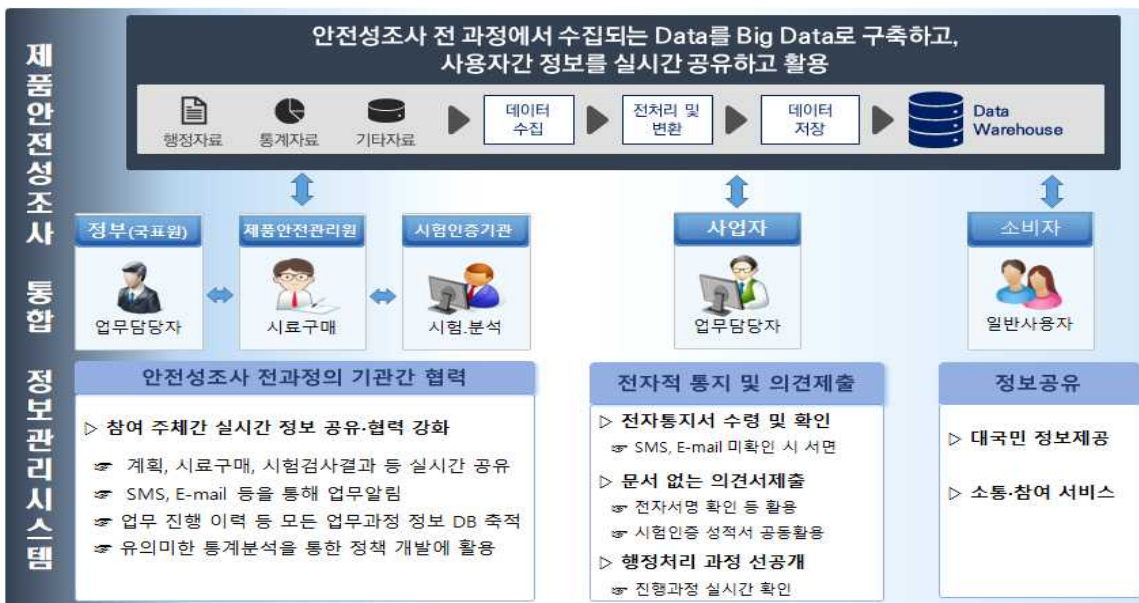
- ▷ 업체별 행정처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업 또는 관련 문서 생성, 시행, 유통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적오류 발생 가능성\* 상존
  - \* 행정처분 과정(사전통지, 청문, 사실확인, 최종처분 등)에서 다양한 행정문서가 생성 및 시행되며 유통 과정의 수신.접수 확인, 오류정정 요청 등 단순한 민원 지속
- ▷ 온라인 유통구조 급성장\* 등 시장변화 및 데이터 활용 등 급속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성조사 업무체계의 디지털 전환 시급
  - \*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조원): `17) 94 → `18)113 → `19)137 → `20)157 → `21)187
  - ※ `22.8월 기준 177조원 규모로 전년 동기(153조원) 대비 16.0%, `17년(79조원) 대비 125.4% 급증

#### □ 안전성조사 원스톱 업무처리 시스템 구축

- (업무 자동화) 전자적 행정처분 통지 및 사업자 의견서 제출, 진행 정보확인 서비스 제공 등 업무 자동화 및 사업자 불편 최소화(`25)
  - \* 안전성조사에 따른 연 1,500여개 부적합 제품별 행정절차(사전통지/의견수렴(청문)/최종통지) 이행에 따른 업무부담 및 사업자 민원 등을 개선

#### □ 선택과 집중을 위한 데이터기반 안전성 조사 실시

- (데이터기반 조사체계) 안전성조사 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 및 제품안전 통계 데이터를 표준 DB화하여 위해우려 제품 선별 등 조사에 활용
  - \* 안전성조사 시 사용되는 각종 정보를 양질의 Big Data로 전환하여 시스템 사용 주체별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제공



### 3-4 온라인쇼핑몰 위해우려 제품 안전관리

#### 【 필요성 】

- ▷ (유통감시)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불법·리콜 제품을 소비자단체와 모니터링\* 중이나, 사이트방문/키워드검색 등 단순·반복 업무 효율화 필요
  - 공정위의 인증정보 표시 규제와 연계하여, 리콜제품 자동선별 프로그램을 활용
- \* 온라인 모니터링 적발/후속조치 건수: ('20) 15,350/11,450 ('21) 10,547/7,915 ('22) 12,538/10,156
- ▷ (쇼핑몰사와 협력) 기존의 사후 차단방식\*으로는 온라인시장 확대와 다품종·소량 위해제품 유통에 대한 적기 대응에는 어려움
  - \* ①위해의심 제품 신고·접수 → ②현장조사·사실확인 → ③행정조치 등 위해제품 판매차단
- ▷ (중고거래) 성장세가 가파른 중고거래 시장\*은 개인간 거래 특성으로 위해제품 판단 및 판매자 행정조치가 어려워, 감시·단속에 한계
  - \* 중고거래 시장규모 추이(한국인터넷진흥원, 22.5월): ('19) 4조원 ('20) 20조원 ('21) 24조원

#### □ 온라인 쇼핑몰 불법·리콜제품 유통 차단

- (감시 강화) 소비자단체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유통 위해제품 모니터링에 “리콜제품 자동 식별 프로그램(리콜제품RPA)”을 시범 적용('23)
  - 시범 적용 결과를 종합검토하여 본격 활용\*('24~)
- \* '제품 판매 온라인 사이트 방문 → 사이트에서 리콜제품 키워드(모델명·제품명·사업자명 등) 입력 → 리콜제품 판매 정보(판매사업자·사진·사이트주소 등) 수집' 등 단순·반복 업무에 SW를 활용
- (협력 강화) 쇼핑몰사와 판매차단이 필요한 “위해 우려 제품” 정보 공유 및 콜센터운영과 맞춤형교육 등 제품안전 관리 지원\* 협력체계 강화('23~)
  - \* 관리원이 운영 중인 불법제품 신고 콜센터와 지자체 공무원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위해제품 처리 상담, 업무담당자 법제도 교육 등 쇼핑몰사의 자체 제품안전 관리 역량 적극 제고

#### □ “위해 우려 제품” 중고거래 방지

- (위해제품 거래방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위해제품 거래 차단 방법\* 및 공익광고 등 안전한 중고제품 거래에 대해 협력 추진('23~)
- \*\* (예시) 판매자·구매자가 리콜여부 또는 인증정보 조회하고 위해제품 발견 시 신고, 플랫폼 운영사가 위해제품 자동식별·차단 및 위해상품차단시스템 연계 등

## 4.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제품안전관리 기반 조성

### 4-1 국내외 제품안전 채널 협력 확대

#### 【 필요성 】

- ▷ 글로벌 마켓 활성화로 인해 수입제품의 비중이 높은 상황('21년 기준, 약 64.1%)에서, 소관부처 공무원 파견을 통해 책임성 있는 행정구현 필요
- ▷ 불법제품 합동단속이 특정지역에 편중되고 있으며, 판매중지, 개선 또는 수거·파기(리콜) 등 지자체의 명령처분 사업자 이행점검에 어려움
- ▷ 제품안전분야 국가간 기술교류 및 국제기구 활동 확대 필요

#### □ 부처 협력을 통한 수입통관 협업검사의 책임성 강화

- **(부처 인력교류)** 불법·불량제품 통관율이 높은 세관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 직접 파견을 통한 협업검사 수행 추진

#### □ 불법제품 단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자체 협력 추진

- **(전문성 강화)** 기존 전국단위 워크숍(기존 상반기 서울대전 2회)과 함께, 시·군·구 담당자를 위한 현장중심의 워크숍(하반기) 추가 개최('23~)
- **(합동점검)** 불법제품 합동단속 지역\*을 확대하고, 지자체 명령처분 현황 조사·분석('23~) 및 명령처분 후속이행점검 지원('24~)

\* ('18) 인천·대구·제주 → ('19) 인천·대구·울산·제주·화성 → ('21) 인천·대구·대전

#### □ 제품안전정책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

- **(정책주도)** ISO 소비자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우리나라가 선출(문은숙 박사, '22.02) 됨에 따라 제품안전, 리콜 등 신규 프로젝트 제안 추진
- **(양자협력 강화)** 제품안전 환경변화 적시 대응을 위한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 국가간 실무자급 협력채널 확대

\* 사고조사 등 실무절차, 사례 공유를 위한 국표원-CPSC간 양자회의 既 실시('22.05, '22.07)

- **(국제포럼)** 국내외 제품안전 관련 정책방향 공유 및 우리나라 주도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글로벌 제품안전포럼 지속 운영

## 4-2 제품안전 기술개발사업 운영 개선

### 【 현 황 】

- ▷ 제품안전 기술개발 사업(R&D)의 성과 개선 위한 선택과 집중 필요
- ▷ 기업에서 생산되는 결함이 확인된(사고조사, 기업자체판단 등) 제품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 유도 필요

### □ 제품안전 기술개발(R&D) 사업의 우선 분야 선정·지원

- 제품안전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 규제 완화 및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기준 등 우선 분야 중심 지원

[제도개선]	[기업시장진출 지원]
안전관리 품목 관리수준 조정, 안전기준 재검토, 국제기준 도입 등 제도개선 분야	개발제품의 안전기준 수용여부 실증 및 신기술·신제품 안전관리체계 구축 분야
[소비자안전성 강화]	[디지털전환]
기존 관리품목의 소비자 피해사례 분석, 재발방지 등 소비자 안전성 강화 분야	제품안전정보 가공, 행정효율화 등으로 제품안전관리 효율성 제고 분야

### □ 지원과제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신청자격 완화

- **(지원확대)** 융복합 산업 발전에 기인한 신기술, 신수요 제품의 신속한 제품안전 지원을 위해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등 지원과제 확대
- **(실증지원)** 기업의 최신 안전기술(HW대체 SW 등) 반영 및 생산 제품의 안전기준 수용성 검증까지 지원(과제당 2억이내) 가능토록 추진  
\* 현 R&D 사업이 '25년에 종료됨에 따라 신규 R&D 기획 추진('26~'30, 100억원/년)
- **(자격완화)** 기업주관의 제품안전기술 개발 및 생산제품 적용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신청자격의 제한(비영리기관) 완화 검토

### □ 기업생산 결함제품 개선을 위한 기술자문 사업 신규 추진('23~)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여 결함제품의 위해 우려 요소 분석 및 개선점 도출 등을 지원  
\* '23년도에 시범(소수기업) 실시, 사업 수행 성과를 반영하여 지원규모 확대 추진

## 4-3 맞춤형 제품안전정보 제공 및 활용 확대

### 【 필요성 】

- ▷ 비대면 소비로 온라인 거래가 증가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社, 입점업체 등의 인증대상 여부 확인 관련 잦은 문의 및 애로 발생
- ▷ 기업과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안전한 제품생산·유통 및 사용을 위해 인증·리콜 여부를 검색하는 제품안전정보 활용이 급증  
\* 제품안전정보활용(건/일) : '17년(13만) → '19년(17만) → '21년(30만) → '22년(35만)
- ▷ 인증, 리콜 등 일부 자료는 최근 기업·소비자 활용이 증가하였으나, 자료를 평가·분석해 수요자가 쉽게 활용토록 보급하는 체계 미흡

### □ 미인증 제품 유통방지를 위한 온라인상품 제품분류 표준체계 확립

- **(분류체계)** 글로벌상품분류(GPC)를 기반으로 산업부 소관 안전관리 품목(전기·생활·어린이)에 대한 분류체계(안) 마련(~'23.12) 및 범부처 확대('24~)\*  
\* ①식약처(위생용품, 가정용 의료기기 등), ②환경부(생활화학제품 등) 등
- **(가이드 마련)** 시범적용 과정에서 확인된 안전관리품목 속성 부여 방법 및 타부처 관리 품목 매칭 방법 등을 담은 가이드(안) 마련(~'23.12)
- **(시스템)** 표준제품분류체계 구성요소(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및 속성)를 보완·추가 및 관리 가능한 표준 제품분류체계 운영·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쇼핑몰 등 업계에 확산 추진

### □ 수요자 중심 제품안전정보 활용 확대

- **(소비자)** 인증, 리콜 등 수집된 제품안전정보를 분석·가공하여 다양한 형태의 제품안전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추진  
\* ①인포맵(인증·리콜제품), ②주의보 및 경보(위해제품), ③웹진(리콜·위해·통관 등)
- **(기업)** 수집한 안전정보를 OPEN API 등 전산 연계를 통해 기업에 제공하여 위해제품 사전 차단 및 정보앱 개발 등에 활용하도록 지원  
\* 제품안전정보 오픈포럼('21.11월 발족)을 중심으로 온라인몰, 유통, S/W 기업 등의 『미인증제품 사전 점검·차단』 도입 등 민간 자율의 데이터기반 안전 관리를 장려

□ 제품안전정보 관리 체계 내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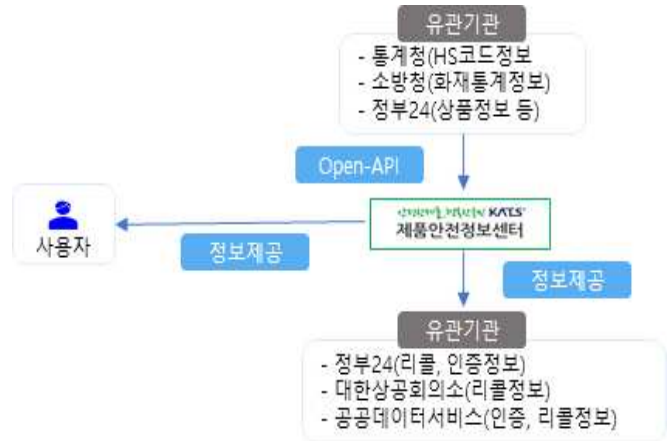
- (관리시스템) 제품안전정보망(안전포털)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콘텐츠를 재구성하는 등 이용자 편의를 고려, 최신 트렌드로 개편

\* ①시스템(사용자 집중 시 다운), ②보안(암호화 취약), ③DB(실시간 정보수집 미흡)


- (정보연계) 리콜, 인증 등 정보에 대해 유관 기관과 공유·활용 확대

통계청, 소방청, 정부24 등과  
제품정보 수집·공유 확대

정부24, 공공데이터서비스 등과  
실시간 인증, 리콜정보 연계 추진



< 제품안전정보 수집·활용 체계 >

정보 수집			정보망 (DB화)	정보 활용 (공유)			
KC 인증기관	인증정보	연 계	 인증정보 리콜정보 안전성조사정보 사고조사정보 위해정보 모니터링정보 통관정보	관계 부처 · 단체	불법·불량제품 수입차단	관세청	
한국소비자원	위해신고정보				리콜제품 유통차단	대한상의	
관세청	통관정보				위해제품 정보안내	공정위 환경부	
국표원	국내리콜정보	생 성		▶	기업	리콜제품 판매차단	유통업체
	해외리콜정보					제품안전사고 예방	제조업체
	안전성조사정보					제품안전정보 검색, 구매 참고	
	사고조사정보					안전성·사고조사 → 조치(리콜, 개선)	
사고신고(보고)정보			국민				
모니터링정보		국 표 원		안전기준 및 표준 제·개정			

□ 제품안전정보 활용 확대를 위한 홍보강화

- (홍보강화) 유튜브 구독자와 SNS 팔로워 이벤트를 상시 진행하고, 홍보 대상별 관심도 높은 플랫폼\* 조사 및 발굴을 통한 홍보효과 극대화

\* '키즈노트', '아이엠스쿨'과 같이 학부모들이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 '아트앤디자인', '필아트' 등 미술전문 사이트, '올콘', '씽긱' 등 공모전 사이트 등

#### 4-4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역량 강화

##### 【 필요성 】

▷ 리콜 이행점검 등 기존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리크스평가 등 새롭게 추진 예정인 업무에 대한 체계화를 통해 제품안전 사후관리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 필요

- 제품안전 사후관리 업무시스템 통합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
  - (통합시스템 마련) 수작업 및 일부 전산화를 통해 수행 중인 개별 시스템\* 통합으로, 유기적인 사후관리 체계 마련
    - \* 불법·불량제품조사, 리콜이행점검, 수입제품 조사 등
  - (서비스 개선) 불법제품신고, 사고신고 등을 위한 절차 및 홈페이지 등을 기업·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편의성·신뢰성 제고
- 온라인 불법제품 모니터링 효율화 등 사후관리 전문성 확립
  - (모니터링) 시중유통제품 모니터링 효율화를 위한 소비자단체 협력 및 “리콜제품 자동 식별 프로그램(리콜제품RPA)” 운영
  - (리스크평가) 품목선정, 시나리오 정립, 리스크 분석, 위해도 결정과 후속 조치(안) 마련 및 DB구축 등 리크스평가 전반에 대한 전문화
  - (안전성조사) 연중 모니터링 주관기관 지정(23~)에 따른 업무 체계화
  - (분류체계) GPC기반의 온라인상품 제품분류 표준체계 운영·보급

구분		AS IS	TO BE
업무 개선	업무 시스템	업무별 시스템 운영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한 유기적인 업무 추진
	서비스	민원, 신고를 위한 홈페이지·콜센터 운영	기업·소비자 중심으로 개편
업무 강화	불법제품 모니터링	소비자단체 협력을 통한 모니터링	“리콜제품 자동 식별 프로그램” 도입 병행을 통한 운영 효율화
	리스크평가	리스크평가 수행을 위한 기반마련	리스크평가 전반에 대한 전문화
	안전성조사	매년 사업자로 참여	연중 모니터링 주관기관 지정에 따른 업무 체계화
	온라인상품 분류체계	온라인상품 제품분류 표준체계 개발중	온라인상품 제품분류 표준체계 운영·보급 지원

\* 사업추진 효율성, 신규 업무 등을 고려한 조직 재설계 및 인력확충 병행

# VI

## 향후 추진일정

### 전략 1

#### 【제도】 기업·소비자 Win-Win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과제	세부 과제	담당부처	'23	'24	'25
① 안전관리대상 규제수준 정비	① 안전관리수준 조정	산업부			
	② 안전인증 모델구분 재검토				
② 안전기준 시험항목·방법 일제 정비	① 안전기준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정비	산업부			
③ 민간주도 안전관리 지원	① 민간주도 안전관리 활성화	산업부			
	② 영세기업 시험비용 지원				
	③ 어린이제품 공장심사 비용 개선				
	④ 기업 맞춤형 컨설팅				
④ 국제적 환경변화 신속 대응	① 안전기준 최신화 및 해외시험결과 수용 확대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등			
	② 안전인증기관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				
	③ 자발적 리콜 활성화				

### 전략 2

#### 【사전】 소비자 안전강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

추진 과제	세부 과제	담당부처	'23	'24	'25
① 비관리제품 규제공백 해소를 위한 체계 정비	① 부처배정을 위한 절차정비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관세청 공정위 등			
	② 부처간 정보공유 활성화				
② 신수요제품 안전관리	① 규제샌드박스 사업 대상 안전관리	산업부			
	② 신기술 및 소비자 제품 신수요 대응				
	③ 사용후전지 안전성검사제도 시행				
③ 사회적 배려계층 안전관리 지원	① 취약계층 제품 공통기준 마련	산업부			
	② 계층별 특화된 인식제고 프로그램 운영				
④ 제품 리스크평가 활성화	① 리스크평가 정례화 및 체계화	산업부			
	② 사회이슈 제품 리스크평가 확대				
	③ 리스크 자가진단 체계 보급·활성화				
	④ 리스크평가 제도 이행을 위한 기반 마련				

**전략 3**

**【사후】 촘촘한 시장관리를 위한 사후관리의 디지털전환**

추진 과제	세부 과제	담당부처	'23	'24	'25
① 데이터기반 제품사고조사 추진 체계 구축	① 사고조사 추진체계 개편	산업부			
	② 데이터기반 능동적 사고조사 추진				
② 위해상품 유통·판매 차단	① 위해상품 차단시스템 확산	산업부			
	② 불법·불량제품 유통 모니터링 강화	산업부			
	③ 수입통관 HSK 세분화 및 규격설정	산업부 관세청			
③ 안전성조사 업무처리 개선 및 선택과 집중	① 안전성조사 원스톱 업무처리시스템 구축	산업부			
	② 데이터기반 안전성조사				
④ 온라인쇼핑몰 위해우려 제품 안전관리	① 온라인 쇼핑몰 불법제품 유통 차단	산업부 공정위			
	② 위해우려 제품 중고거래 방지				

**전략 4**

**【기반】 효율적인 제품안전관리 기반 조성**

추진 과제	세부 과제	담당부처	'23	'24	'25
① 국내외 제품안전 채널 협력 확대	① 부처 협력을 통한 수입통관 협업 검사의 책임성 강화	산업부 관세청			
	② 불법제품 단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자체 협력	산업부			
	③ 제품안전정책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	산업부			
② 제품안전 기술개발사업 운영 개선	① 우선지원분야 선정·지원	산업부			
	② 지원과제 및 사업범위 확대 등				
	③ 결함제품 개선 지원사업 신규 추진				
③ 맞춤형 제품안전정보 제공 및 활용 확대	① 온라인상품 제품분류 표준체계 확립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등			
	② 수요자중심 제품안전정보 활용 확대	산업부			
	③ 제품안전정보 관리체계 내실화	산업부 공정위			
	④ 제품안전정보 활용확대 홍보 강화	산업부			
④ 한국제품안전 관리원 역량 강화	① 제품안전 사후관리 업무시스템 통합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	산업부			
	② 온라인 불법제품 모니터링 효율화 등 사후관리 전문성 확립				

□ 21개 중점과제에 대한 이행점검결과\*, 20개 중점과제는 이행완료하였고, 1개 중점과제는 부분이행 하였음

\* 전문가, 소비자 단체, 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점검

□ 중점과제별 이행점검 결과

중점 과제	이행점검결과	
	이행 여부	이행내용
<b>1-1. 제품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b>		
1-1-1. 유통 제품 및 시험인증데이터에 대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표준 상품정보 DB 및 구매정보 DB 각 100만건 축적, 시험인증기관별 데이터 현황 및 디지털화 수준 진단 완료 ('21)
1-1-2. 위해, 통관 등 제품안전 빅데이터 구축 로드맵 개발	○	제품안전 빅데이터 구축 기술로드맵 개발 완료('21)
<b>1-2. 불법제품 자동식별 및 신고시스템 구축</b>		
1-2-1. 온라인 쇼핑물의 불법·리콜 제품 검색시스템 구축	○	온라인 리콜제품 자동식별 시스템(RPA) 개발 완료('22)
1-2-2. 소비자 참여 안전감시 앱 개발 및 쇼핑몰 신고채널 추진	○	쿠팡, 옥션, 11번가, g마켓 등 주요 온라인 유통사에서 위해상품 신고채널 운영
<b>1-3. 제품안전정보 수집 및 제품안전 시스템 개선</b>		
1-3-1. 제품 품목별 코드 매칭을 통한 안전관리 대상품목의 체계적 관리	○	관리품목과 HS코드 및 KSIC 코드매칭 완료('21)
1-3-2. 제품안전정보의 수집 및 관리 체계화	○	수요자 중심 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제품 안전정보오픈포럼 신설('21)
1-3-3. 제품안전 정보수집·분석·제공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추진	○	제품안전정보포털의 인증정보 검색 및 통계분석 기능·취약점 개선
<b>1-4. 위해성 평가 센터 구축</b>		
1-4-1. 위해도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문 인력 확보	○	위해도 평가 기법 개발을 위한 R&D 과제 추진 및 융복합신기술제품안전기술 지원사업으로 전문가 위촉
1-4-2. 제품 위해도 평가 추진을 위한 시스템 및 위해요인 DB 구축	○	기업의 자가진단 등을 위한 제품 위해도 평가 시스템 개발
1-4-3. 유통 제품에 대한 전담 위해성 평가 센터 구축	○	제품 위해성평가 서비스플랫폼 시스템구축 완료 및 관리원 내 제품 위해성평가를 전담하는 조직 구성 및 운영
<b>1-5. 조사분석 기관 역량 제고</b>		
1-5-1. 안전성조사 참여 기관간 시험방법 동질화	○	안전성조사 전 실무협의회 개최·운영, 안전성조사 품목별 시험방법 교차검토 및 협의체 구성·운영
1-5-2. 제품안전 시험기관간 시험·검사 능력의 동등성 확보	○	안전확인 시험기관 지정 및 심사가이드 개정(시행 '21.7)
1-5-3. 중대사고 조사의 전문성 제고	○	제품사고조사 업무가이드(안) 도출 및 사고 조사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개발

<b>2-1. 융복합 제품의 시장출시 촉진</b>		
2-1-1. 융복합 IoT 기술 등이 적용된 소비자제품에 대한 허가인증 촉진	○	기술혁신 기업의 시장출시 지원을 위해 임시허가, 실증특례 진행중
2-1-2. 융복합 신제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준(안) 개발 및 제품개선 지원	○	규제샌드박스 인증기준 사업 25건 및 제품 성능·안전 개선 지원 사업 20건 진행 중
<b>2-2. S/W 기능안전성 도입 및 IoT·AI 제품의 평가방법 개발</b>		
2-2-1. 가전분야 등 소프트웨어 기능 안전성 평가인증 적용 검토	○	대상품목 선정 및 시험절차서 개발 완료('21)
2-2-2.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적용 제품의 안전도 평가방법 개발	○	기능안전, 보안, 성능 관점의 평가 기준 마련 및 국내 주요기업과 인공지능 적용제품(생장고, 세탁기, 에어컨) 평가 시범 적용
<b>2-3.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안전관리 품목·기준 정비</b>		
2-3-1. 새로운 제품에도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안전기준 개발원칙 정립	○	모듈형 제품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전안법」 시행규칙, 운용요령 개정 완료('21.9)
2-3-2. 기술진보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 품목 조정 및 기준 정비	○	빙삭기, 전동공구, 오디오·영상장치 등에 대한 품목 조정 완료
<b>2-4. 중소기업의 안전역량 강화 지원</b>		
2-4-1. 안전기준 준수 및 인증 획득을 위한 온·오프라인 컨설팅 실시	○	스타트업 제품안전 가이드 제작·배포 및 벤처·스타트업과 인증기관 간 소통창구 마련
2-4-2. 시험검사 비용 지원 및 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	'20년 115개, '21년 90개 중소기업 시험 비용 지원 및 제품안전관리 가이드 배포
<b>2-5.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제도 강화</b>		
2-5-1. 안전취약 계층을 위한 공통 안전 가이드 마련	○	안전한 어린이제품 구매 및 사용가이드 제작·배포 완료 및 고량자·장애인 공통 가이드 초안 마련 중
2-5-2.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 개선	○	어린이제품 동일모델 제도 개선 관련 인증 기관 등록시스템 개선 및 위해제품 효력 상실 법근거 마련('22.8 시행)
2-5-3.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선풍기, 전기밥솥 등에 대한 표시기준 강화 및 공급자접합성확인대상 업체에 대한 교육 및 홍보자료 배포
<b>2-6.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안전규제 완화</b>		
2-5-1. LED조명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본격시행 및 확산 추진	○	국내 7개 기관을 '다수인증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6개 제품군에 대한 기업 지원활동 실시 중
2-5-2. 모듈형 인증제도 도입 및 의료 기기 KC인증 면제범위 확대	○	모듈형 제품 인증을 위한 「전안법」 운용요령 개정 추진 및 면제대상 범위 확대를 위한 동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0.8)
2-5-3. 안전규제로 인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안전요건 완화	○	안전인증 전기제품 자체 검사 주기 완화 및 품목 수준 조정
<b>3-1. 수입제품 통관 검사 강화</b>		
3-1-1. 위해우려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적 통관검사와 대상 확대	○	신학기, 가정의달, 난방용품 등 주기적인 집중검사 실시
3-1-2. 조사인력확대 및 협업강화	△	조사인력 확대를 위해 관세청 및 제품 안전관리원과 지속 협의 중
<b>3-2. 유통제품 조사·단속 강화</b>		
3-2-1.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제품안전 모니터링 강화	○	6개 소비자단체 모니터링단 운영 및 리콜 제품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3-2-2.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성조사 강화	○	소비자 구입·사용 전 선제적 조사 및 조사 품목 세분화로 안전성조사 효율성 제고
3-2-3. 사전 단속팀 신설 등 단속 강화	○	제품안전관리원 內 민원조사2팀 신설 및 시장감시 인건비 증액 편성('21)

<b>3-3. 구매대행 제품 안전관리 강화</b>			
	3-3-1. 안전성조사, 정보제공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최소화	○	해외 구매대행 제품 안전성조사 실시 및 해외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 수집
	3-3-2. 온라인몰, 인터넷 카페 등에서 불법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계도	○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제품의 온라인몰 구매대행 중지 조치
	3-3-3. 위해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사업자 의무 강화	○	위해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21.3)
<b>3-4. 위해제품 신속 차단</b>			
	3-4-1.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확산 및 바코드 도입 추진	○	다이소, 쿠팡, 네이버 등 시스템 도입·운영,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고도화 완료('21.10)
	3-4-2. 유통사,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으로 신속한 리콜정보 전파	○	알림장업, 맘카페 등과 연계하여 리콜제품 정보 제공
<b>3-5. 위해제품 리콜이행 강화</b>			
	3-2-1. 자발적 리콜 활성화를 위한 세부 절차 수립 및 참여기업 유도	○	자발적리콜 이행점검 지침(안) 개발 완료
	3-2-2. 업체별 전담자와 상시점검 등을 통한 리콜이행 강화	○	관리원 내 리콜전담책임자 지정하여 연중 상시 감시체계 구축·운영
	3-2-3. 리콜이행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및 처벌규정 강화	○	법령정비 필요성 검토 연구용역 추진 및 법률자문 실시
<b>4-1. 비관리 제품 분류 가이드 개발 및 발굴 강화</b>			
	4-1-1. 위해요소의 신속검토 등을 위한 소관부처 분류기준 정립	○	비관리제품 소관부처 분류 가이드 개발 연구 용역 실시('21)
	4-1-2. 온라인 유통시장 집중 조사 및 비관리제품 발굴 강화	○	시중유통 비관리제품 조사분석 연구 용역 실시('20)
<b>4-2. 관계부처 및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b>			
	4-2-1.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유통 방지를 위한 범부처 협업 강화	○	해외 위해제품 관리 실무협의체를 통한 협업 강화 및 국내유통 해외리콜제품 공동감시 및 대응(매월 1회)
	4-2-2. 제품안전을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	OECD WPCPS, ISO COPOLCO 등 국제회의 참석 및 글로벌제품안전포럼 개최('21.11)
<b>4-3. 제품안전관리원 역량 강화</b>			
	4-3-1. 광역·온라인 유통제품 안전망 구축 추진	○	관리원 사후관리 부서 인원 확충 및 안전 기준준수 생활용품 대상 소상공인 밀집 지역 홍보 및 교육
	4-3-2. 제품안전관리 업무의 전문화	○	"위해 우려 제품" 등에 대한 초기 위해도 평가 방법 개발 중('21~)
	4-3-3. 국내·외 제품안전기관과 업무협력 강화	○	제품안전혁신포럼 개최 및 정책제언을 위한 분과위원회 개최('21), OECD 등 국제 회의 참석
<b>4-4. 제품안전 기술개발</b>			
	4-4-1.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시험인증 서비스 및 안전기준 개발 추진	○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기공식 개최 및 유연전지에 대한 안전기준 제정안 마련('21.6)
	4-4-2. 제품안전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하도록 기술개발 사업 확대	○	제품안전 기술개발 예산 증액 ('20년 50억 → '21년 58억원 → '22년 67억원)
<b>4-5. 교육·홍보 다각화</b>			
	4-5-1. 제품안전 소비자 교육·홍보 다각화	○	선도학교 및 제품안전체험관 지속 운영, 청소년 교육 시범학교 5개교 선정 및 특강 실시
	4-5-2. 생활밀착형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다각화	○	어린이 제품안전 그림 공모전 실시 및 대학생 제품안전 홍보단 운영